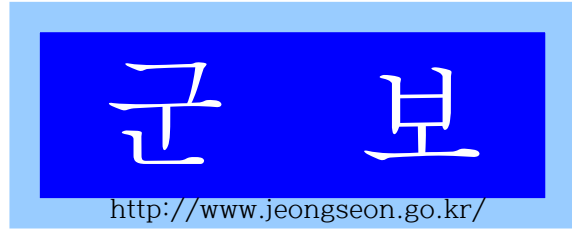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56호 2024. 3. 20. (수)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3016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30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4
- 정선군 조례 제3018호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5
- 정선군 조례 제3019호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2
- 정선군 조례 제3020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25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40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28
- 정선군 규칙 제1403호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33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4-19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소로2-2호선, 소로3-10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36
- 정선군 고시 제2024-20호 정선(북평)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40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4-263호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46
- 정선군 공고 제2024-276호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52
- 정선군 공고 제2024-294호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62
- 정선군 공고 제2024-304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73
- 정선군 공고 제2024-310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76
- 정선군 공고 제2024-31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98

○ 정선군 공고 제2024-320호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13
○ 정선군 공고 제2024-321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18
○ 정선군 공고 제2024-324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3
○ 정선군 공고 제2024-325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38
○ 정선군 공고 제2024-341호 2024년 정선군 명예군민 추천 공고.....	142

조 례

제295회 정선군의회(2024. 3. 5.)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3. 15.)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16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제2항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정활동비) ① (생략)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 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2조(의정활동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정자료수 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 동비 30만원----. ③·④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증액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 12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 30만원)

제295회 정선군의회(2024. 3. 5.) 및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2. 5.)에서 의결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2조(「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3조(「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30세 이상 만50세”를 “30세 이상 50세”로 한다.

제4조(「정선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5조(「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제6조(「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만 12세”를 각각 “12세”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만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9조(「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만 18세”를 “18세”로, “만 45세”를 “45세”로 한다.

제10조(「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만7세”를 “7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만13세”를 “13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11조(「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만 4세”를 “4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한 날 현재 <u>만 19세</u>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u>19세</u>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u>만 65세</u> 이상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u>만 19세</u>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	제2조(정의) ----- -----. 1. ----- <u>65세</u> ----- ----- -----. 2. ----- <u>19세</u> ----- -----

현행	개정안
람을 말한다.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제3조(「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미혼자”라 함은 법령상 배우자가 없으며 <u>만30세 이상 만50세</u> 미만 으로서 혼인의 경험 이 없는 남성을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30세 이상 50세</u> ----- ----- -----. 3. (현행과 같음)

제4조(「정선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략) 6.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u>만 18세</u> 이하인 가정의 그 부모와 자녀 7. ~ 9. (생략)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u>18세</u> ----- ----- 7. ~ 9. (현행과 같음)

제5조(「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지원 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을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u>만18세</u>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 대상) ----- ----- ----- ----- ----- <u>18세</u>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제6조(「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승차인원) 케이블카 1대당 승차정원은 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승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승차인원) ----- -----. ----- -----.
1. 승객	1. ---
가. <u>만 12세</u> 초과인 경우: 1명	가. <u>12세</u> -----
나. <u>만 12세</u> 이하인 경우: 0.5명	나. <u>12세</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케이블카 시설의 이용을	제15조(이용제한) ----- ----- -----

현행	개정안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u>만 12세</u> 미만의 어린이 5. ~ 7.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u>12세</u> ----- 5. ~ 7. (현행과 같음)

제7조(「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 및 <u>만65세이상</u> 의 노인 <단서 삭제 2017.3.7.> 3. ~ 13. (생략)	제7조(관람료 면제) ----- ----- -----. 1. (현행과 같음) 2. ----- ----- <u>65세 이상</u> ----- ----- 3. ~ 13. (현행과 같음)

제8조(「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전형 및 위촉) ① ~ ④ (생략) ⑤ 상임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u>만 60세</u> 이하로 한다.	제7조(전형 및 위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60세</u> -----.

제9조(「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 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 한다. 가. (생 략) 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 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 주하는 <u>만 18세</u> 이상 <u>만 45</u> <u>세</u> 이하인 사람 5.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u>18세</u> --- <u>45세</u> ---- ----- 5. (현행과 같음)
--	---

제10조(「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시설사용료의 징수) (생 략) ② “어린이”는 <u>만7세</u> 이상 12 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③ “청소년”은 <u>만13세</u> 이상 1 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④ “성인”은 <u>만19세</u>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의2(시설사용료의 징수) (현행과 같음) ② ----- <u>7세</u> ----- -----. ③ ----- <u>13세</u> ----- -----. ④ ----- <u>19세</u> ----- -----.

제11조(「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	제7조(입장료 면제) ----- -----

현행	개정안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지 아니한다.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만 4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3. 4세 ----- 65세 -----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료와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조(사용료와 수수료 감면) ①-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정선군 관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자에 대한 진료(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9. ----- 65세 ----- ----- ----- -----
10. · 11.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

1. 일반요금

구 분	이용료(원)	
	개인	단체(20명 이상)
가. 대인(1명)	15,000	14,000
나. 소인(1명)	11,000	10,000

※ 비고

- 위 표에 따른 요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인 이용료: 13세 이상인 사람
나. 소인 이용료: 13세 미만인 사람. 다만, 보호자가 동반한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하여는 보호자 1명 당 영아 1명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 케이블카 이용료는 왕복 이용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이용자가 편도구간만 탑승하였더라도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2. 할인요금

구 분		이용료(원)
가. 정선군민 및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 및 폐광지역·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1) 대인(1명)	10,000원
	2) 소인(1명)	8,000원
나. 장애인(1명)	1) 대인(1명)	10,000원
	2) 소인(1명)	8,000원
다. 국가유공자 등(1명)		10,000원
라. 65세 이상인 사람(1명)		10,000원

※ 비고

- 위 표 가목에서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이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위 표 나목에서 장애인 할인요금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별표 1 】

입 장 료

구분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비고
개인	2,000원	1,500원	1,000원	
단체	1,500원	1,000원	500원	

- .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자와 중·고등학생증을 소지한자
- . 군인 :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 . 어린이 : 4세 이상 13세 미만자와 유치원생, 초등학생
- . 어른 : 청소년, 군인, 어린이를 제외한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인자
- . 단체 :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

☐ 제안이유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공포·시행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만’ 으로 규정한 자치법규의 조문에서 ‘만’ 표현 일괄 삭제

- 만 나이 통일에 따라 ‘만 ○세’ 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

제295회 정선군의회(2024. 3. 5.) 및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2. 23.)에서 의결된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18호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장에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생략) <u>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u> <u><신 설></u> <u><신 설></u>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u>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u> <u>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 <u>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u> <u>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u> <u>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u>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u><신 설></u>	

현행	개정안
	<u>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u>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 5.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6. <u>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u>
<u><신 설></u>	⑦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으로 한다.</u>
<u><신 설></u>	<u>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u> <u>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u>

현행	개정안
<신 설>	<u>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u>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u>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

☐ 제안이유

정선군정조정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위원회를 분리하여 산업단지 기업의 입주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선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4조)

- 1) 정선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한 투자유치위원회 분리
-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3)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한 차례 연임)
- 5)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마련
- 6) 비위행위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 반영
- 7)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나. 회의 등(안 제16조)

- 1)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2) 위원장이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 3)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 듣거나 자료 제출 요청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다. 수당 등(안 제17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 등 실비 지급

제295회 정선군의회(2024. 3. 5.) 및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2. 23.)에서 의결된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19호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단위: 원)

구 분		체 험 료		비 고
		개인	단체(20인 이상)	
목공예체험	성 인	2,000	개인 체험료의 100분의 70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담한다.
	청소년	1,000		
목재전시관	성 인	무료		
	청소년	무료		

[비 고]

- 1. 목공체험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목재전시체험관, 목공체험실 등으로 한다.
-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감면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4.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 5.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 제안이유

- 가. 목재문화 체험을 통해 목재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림문화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을 2023. 4. 1.부터 운영함에 있어
 - 나. 체험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목재문화 확산 및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비 별도 부담 / 2023년 이용객 4,488명)

□ 주요내용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조정(안 제10조제2항 별표 2)

현 행			개 정		
구분	체험료		구분	체험료	
	개인	단체(20인 이상)		개인	단체(20인 이상)
성인	5,000원	개인체험료의 100분의 70	성인	2,000원	개인체험료의 100분의 70
어린이	5,000원		청소년	1,000원	

제295회 정선군의회(2024. 3. 5.) 및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2. 23.)에서 의결된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20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하고,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단,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정용에 한하며, 제7호의 경우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별 누진 요금표 중 가정용 20톤 이하 요금을 적용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자녀가구(<u>셋째</u>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인 경우	8. ----- <u>둘째</u> ----- ----- ----- ----- ----- -----
<u><신 설></u>	9.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

☐ 제안이유

- 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의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예우문화 확산 및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 나. 다자녀 가구의 주거·양육 부담을 줄이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 주요내용

- 가. 다자녀 기준 완화(안 제40조제8항)
-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중 기존 셋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서 둘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로 기준 완화
- 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 추가(안 제40조제9항)
-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 추가

규 칙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2. 5.)에서 의결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40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의 개정)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19세미만”을 “19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만 19세미만”을 “19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2조(「정선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3항 전단 중 “만 14세”를 “14세”로 한다.

제3조(「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16조제1항제15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u>만 19세 미만</u> 의 자를 말한다. 다만, <u>만 19세</u> 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1. ----- ----- ----- <u>19세 미만</u> -----, --- <u>19세</u> ----- -----. 2. (현행과 같음)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생략) 3. <u>만 19세미만</u> 의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4. <u>만 70세</u> 이상의 자 5. ~ 12. (생략)	제3조(감경대상)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u>19세 미만</u> ----- ----- ----- --- 4. <u>70세</u> ----- 5. ~ 12. (현행과 같음)

제2조(「정선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3조(회원가입) ①·② (생략) ③ 회원 가입자가 <u>만 14세</u>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부모,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그 밖에 인정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회원가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14세</u> ----- ----- -----. ----- -----.

제3조(「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6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1. ~ 14. (생략) 15. <u>만 18세</u>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제16조(감면 등) ① ----- ----- -----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u>18세</u> ----- ----- ----- ----- ----- ----- -----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공포·시행에 따라 우리 군 규칙을 일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만’ 으로 규정한 자치법규의 조문에서 ‘만’ 표현 일괄 삭제

- 만 나이 통일에 따라 ‘만 ○세’ 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2. 23.)에서 의결된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403호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u>인감증명서</u> , <u>본인서명사실확인서</u>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 ----- ----- <u>본인서명사실확인서</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요구 근거 폐지를 통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 121호 일부개정 2009. 12. 30.)에 따라, 해당 규칙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자 함

나.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검토의견 결과 폐지 의견 제출, 단순 채주의 영수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위한 용도이므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으로 대체(안 제51조제1항)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4-19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소로2-2호선, 소로3-10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1992-15호(1992. 2. 13.)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소로2-2호) 및 정선군 고시 2003-41호(2003. 5. 9.)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에 대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8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도로)

나. 명 칭

1) 1공구 : 백두대간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정선5일장 아라리로) 조성사업

2) 2공구 : 정선 소2-2호(녹송둔치)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교통시설 (도로)	소로2-2호	□ L=982m, B=8m (A=7,856㎡)	□ 1공구(관광과 시행) - L=600m, B=4.0~8.0m, A=3,075㎡ □ 2공구(도시과 시행) - L=360.7m, B=2.5~4.5m, A=1,639㎡	
	소로3-10호	□ L=450m, B=6m (A=2,733㎡)	□ 2공구(도시과 시행) - L=94.6m, B=2.5~4.5m, A=506㎡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1공구 관광과장, 2공구 도시과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토지조서(소로2-2호 : 1공구)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정선읍 봉양리	2-2	제방	6,052	1,898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2	정선읍 봉양리	2-34	제방	521	68	“	정선군			
3	정선읍 봉양리	31-4	제방	106	4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4	정선읍 봉양리	33-6	제방	631	175	“	국토 교통부			
5	정선읍 봉양리	33-7	제방	429	11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			
6	정선읍 봉양리	33-9	제방	239	3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7	정선읍 봉양리	33-10	전	2,860	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			
8	정선읍 봉양리	37-2	제방	1,676	712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9	정선읍 봉양리	37-7	전	255	45	“	정선군			
10	정선읍 봉양리	91-1	도로	2,893	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 교통부			
계				15,662	3,075					

● 토지조서(소로2-2호 : 2공구)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정선읍 애산리	415-16 3	제	1,689	11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			
2	정선읍 애산리	415-16 2	제	652	58	“	강원도			
3	정선읍 애산리	383-1	천	192,037	5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환경부			
4	정선읍 애산리	383-2	제	1,033	3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건설부			
5	정선읍 애산리	919-2	제	948	273	“	건설부			
6	정선읍 애산리	2-2	제	6,052	734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7	정선읍 애산리	3-1	임	8,790	8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 재정부			
계				211,201	1,639					

● 토지조서(소로3-10호 : 2공구)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정선읍 애산리	388-2	전	2,044	4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건설부			
2	정선읍 애산리	386-1	도	5,807	32	“	국토 교통부			
3	정선읍 애산리	415-91	제	2,620	26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			
4	정선읍 애산리	415-16 3	제	1,689	168	“	강원도			
계				12,160	506					

정선군 고시 제2024-20호

정선(북평)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정선군 고시 제2017-22호(2017. 3. 3.)호로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조서상 기재착오 사항(지번)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사항 및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8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과규정에 의거 산업촉진지구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경과 조치되어 운영 중 지역여건에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수립 하고 이용여건상 부적합한 용도 등의 재검토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며,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1339-1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라.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정선군청 도시과 비치)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서도 열람이 가능함.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합 계	60,716	-	60,716	
계획관리지역	60,716	-	60,716	

2.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변경없음)

나.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고시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6	남평휴양 단지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북평면 남평리 1350-1번지	60,716	-	60,716	정선고 제50호 (1999.6.10)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남평 휴양단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북평면 남평리 1339-1번지 일원	60,716	-	60,716	정선고 제50호 (1999.6.10)	₩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8	957.7	7,949.3	1	36	376.8	4	746.7	6,287.8	3	175	1,284.7
소 로	8	957.7	7,949.3	1	36	376.8	4	746.7	6,287.8	3	175	1,284.7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957.7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6.0	남평리 609번지	남평리 1081번지	일반 도로	-	99.06.10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10.7	남평리 911번지	남평리 873번지	일반 도로	-	99.06.10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51.5	남평리 909번지	남평리 851-1번지	일반 도로	-	99.06.10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356.0	남평리 1343-1번지	남평리 1349번지	일반 도로	-	99.06.10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8.5	남평리 905번지	남평리 1343-1번지	일반 도로	-	99.06.10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91.0	남평리 1353번지	남평리 1347번지	일반 도로	-	99.06.10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57.0	남평리 1347번지	남평리 878-1번지	일반 도로	-	99.06.10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27.0	남평리 904-1번지	남평리 1093번지	일반 도로	-	99.06.10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계					60,716.0	
기정	주거 용지	단독 주택 용지	A-1		합 계	14,049.4	-
					소 계	7,173.9	
				-1	남평리 1339-1번지	355.0	
				-2	남평리 1339-2번지	878.1	
				-3	남평리 1339-3번지	873.5	
				-4	남평리 1339-4번지	866.2	
				-5	남평리 1339-5번지	905.2	
				-6	남평리 1339-6번지	1,057.8	
				-7	남평리 1339-7번지	1,113.6	
				-8	남평리 1339-8번지	1,124.5	
			A-2		소 계	6,875.5	
				-1	남평리 1341-1번지	1,018.5	
				-2	남평리 1341-2번지	999.2	
				-3	남평리 1341-3번지	991.5	
				-4	남평리 1341-4번지	978.1	
				-5	남평리 1341-5번지	967.9	

구분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6	남평리 1341-6번지	957.2	
				-7	남평리 1341-7번지	963.1	
기정	주거 용지	단독 주택 용지	A-3		합 계	14,419.1	-
					소 계	6,624.1	
				-1	남평리 1343-3번지	665.9	
				-2	남평리 1343-4번지	670.2	
				-3	남평리 1343-5번지	668.6	
				-4	남평리 1343-6번지	676.4	
				-5	남평리 1343-7번지	668.6	
				-6	남평리 1343-8번지	652.6	
				-7	남평리 1343-9번지	652.8	
				-8	남평리 1343-10번지	650.3	
				-9	남평리 1343-11번지	656.3	
				-10	남평리 1343-12번지	662.4	
			A-4		소 계	7,795.0	
				-1	남평리 1348-1번지	652.2	
				-2	남평리 1348-2번지	667.9	
				-3	남평리 1348-3번지	640.8	
				-4	남평리 1348-4번지	670.8	
				-5	남평리 1348-5번지	692.0	
				-6	남평리 1348-6번지	775.5	
				-7	남평리 1348-7번지	876.9	
				-8	남평리 1348-8번지	720.8	
				-9	남평리 1348-9번지	731.5	
				-10	남평리 1348-10번지	699.8	
				-11	남평리 1348-11번지	666.8	
기정	주거 용지	단독 주택 용지	A-5		합 계	17,295.3	-
					소 계	7,062.1	
				-1	남평리 1344-2번지	823.6	
				-2	남평리 1344-3번지	995.4	
				-3	남평리 1344-4번지	661.4	
				-4	남평리 1344-5번지	661.1	
				-5	남평리 1344-6번지	660.0	
				-6	남평리 1344-7번지	659.2	
				-7	남평리 1344-8번지	658.5	
				-8	남평리 1344-9번지	659.9	
				-9	남평리 1344-10번지	661.5	
				-10	남평리 1344-11번지	621.5	

구분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A-6		소 계	5,622.5	
				-1	남평리 1350-1번지	746.1	
				-2	남평리 1350-2번지	752.6	
				-3	남평리 1350-3번지	766.2	
				-4	남평리 1350-4번지	729.0	
				-5	남평리 1350-5번지	648.2	
				-6	남평리 1350-6번지	661.0	
				-7	남평리 1350-7번지	662.0	
				-8	남평리 1350-8번지	657.4	
			A-7		소 계	1,374.3	
				-1	남평리 1346-1번지	726.8	
				-2	남평리 1346-2번지	647.5	
			A-8		소 계	3,236.4	
				-1	남평리 1352-1번지	398.1	
				-2	남평리 1352-2번지	760.0	
				-3	남평리 1352-3번지	882.8	
				-4	남평리 1352-4번지	797.3	
				-5	남평리 1352-6번지	398.2	
기정	주거 용지	근린 생활 용지	A-9		합 계	1,720.6	필지합병가능 (단, 가로 또는 세로의 연결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 합병후 재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
				-1	남평리 1343-1번지	796.6	
				-2	남평리 1343-2번지	924.0	
기정	상업 용지	상업 용지	B-1		합 계	4,220.2	필지합병가능 (단, 가로 또는 세로의 연결한 1개 필지에 한하여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하고, 합병후 재분할시 원 획지선으로 분할)
				-1	남평리 1355-2번지	1,975.7	
				-2	남평리 1355-3번지	2,244.5	
기정	공공 시설 용지	도로	C-1		합 계	7,949.3	-
				-1	남평리 1339-1번지	376.8	
				-2	남평리 1340번지	218.2	
				-3	남평리 1342번지	2,982.1	
				-4	남평리 1345번지	500.4	
				-5	남평리 1347번지	1,247.6	
				-6	남평리 1351번지	566.1	
				-7	남평리 1353번지	1,808.1	
				-8	남평리 1342번지	250.0	
기정	녹지 용지	공원 녹지	D-1		합 계	1,062.1	-
				-1	남평리 1344-1번지	883.1	
				-2	남평리 1339-1번지	179.0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단독주택용지 (A-1 ~ A-8)	남평리 1339-8 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 5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 이	2층 이하	
기정	근린생활 시설용지 (A-9)	남평리 1343-2 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 5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 이	2층 이하	
기정	상업용지 (B-1)	남평리 1335-3 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 5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가목 허용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변경	상업용지 (B-1)	남평리 1355-3 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 5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가목 허용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 이	3층 이하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4-263호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목적, 세입·세출 등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9조)
- 회계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10조)
 - 2028년 12월 31일 한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4. 3. 8. ~ 2024. 3. 28.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472), 팩스(033-560-2596)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파트”란 정선군이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자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2.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비
2.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반환금
3. 그 밖의 아파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독립재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 받을 수 있다.

제7조(예탁)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84호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1조(회계의 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선군 공고 제2024-276호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정선군에서는 2024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2024. 3. 11. ~ 2024.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나. 사 업 비 : 1,855백만원(국비 1,122 도비 209 군비 524)

다. 보급대수 : 146대(승용 86대, 화물58대 승합 2대)

- 전기승용차 : 택시 10%, 우선순위 10%
- 전기화물차(소형) : 우선순위 10%, 택배20%, 중소기업 생산 물량 10%
- 전기화물차(초소형) : 우선순위 10%, 택배20%, 중소기업 생산 물량 10%

라. 보급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거주조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까지 정선군에 주소를 둔자

- ※ 정선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 구매계약서 등의 서류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임.
- ※ 보조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과거 2년 내 강원도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타 시·도(시·군·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 대상자 여부를 확

인할 수 있음.

가. 신청대상

○ 개인 :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

※ 공동명의로 구성된 모두가 거주조건에 해당해야 함.

○ 개인·법인 사업자 : 본사·공장·지점 중 1개소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

※ 본사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기업의 설립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정선군으로 등록해야 함.

○ 렌트·리스 사업자 : 렌트·리스사업자의 본사·공장·지점 중 1개소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 또는 지원차량 실사용자(법인의 경우 소재지)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거주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해야 함.

○ 외국인 : 거주조건에 해당되는 재외국민, F-4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개인사업장 주소가 정선군인 사업장

※ 단, 택시, 화물운송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상 사용본거지를 정선군으로 등록하여야 함.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혹은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최초등록지가 정선군이 아니거나 등록증상 신조 차량이 아닐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시

▶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 화물 5년)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 시

○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

- 취약계층

▶ 취약계층은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가유공자로 한정

▶ 우선순위대상자 + 비대상자 공동명의 신청 시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

미배정(취약계층 1인의 소유로 차량구매 예정인 자에 한함)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 차량등록세 납입 유무 확인 후 우선순위 배정 여부 판단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 ▶ 폐차 대상자는 2023. 2. 13일 이후 폐차가 완료된 대상에 한함
 -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23.2.13,)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가이드라인
 - ▶ 신차 구매지원 보조금과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중복지원 가능
 - ▶ 중복지원 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서 및 자동차말소 등록사실 증명서 등 제출
- 다자녀 가구
 - ▶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에 한함
- 소상공인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신고필증)*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나. 보조금 신청 시 필수 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계약서에 출고 예정일자 필히 기재)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다. 전기차 보급 기준

- 보급기준 : 개인 · 사업자, 법인 · 기관 1대(동일 차종)

구 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승 용	1대	1대	1대
화 물	1대	1대	1대

- ※ 법인의 경우 2대 이상 구입하고자 할 땐 환경공단에 지급 신청
 - 동일 개인이 2년(재지원제한간) 내 2대 이상의 승용 차량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화물은 5년 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 ※ 전국 공통 사항이므로, 타 기관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위반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법인의 전기택시 구매시에는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도비보조금 지원 가능
- 구매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해 공동명의 가능
 - ※ 보조금 부당 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에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전기승용차 : 자동차의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지원

- 5,500만원 미만(100%), 5,500만원 ~ 8,500만원(50%)

-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대 · 중 · 소형

◎ 최대보조금 : 중 · 대형 650만원(기준단가), 소형 : 550만원(기준단가)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추가지원 : 국비 지원액의 20%

* 차상위 이하 계층&청년&생애 최초 구매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 차종 관계없이 250만원 정액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추가지원 : 국비 지원액의 20%

* 차상위 이하 계층&청년&생애 최초 구매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전기화물차 : 경형, 초소형은 정액지원, 소형은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추가지원 : 국비지원액의 30%

- 소형(최대 1,100만원(기준단가)), 경형(최대 800만원), 초소형(최대 400만원)

※ 지역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 · 분류 ·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구매보조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차 보조금 지급

※ 기존규정 상 30%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 전기승합차: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중형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차등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 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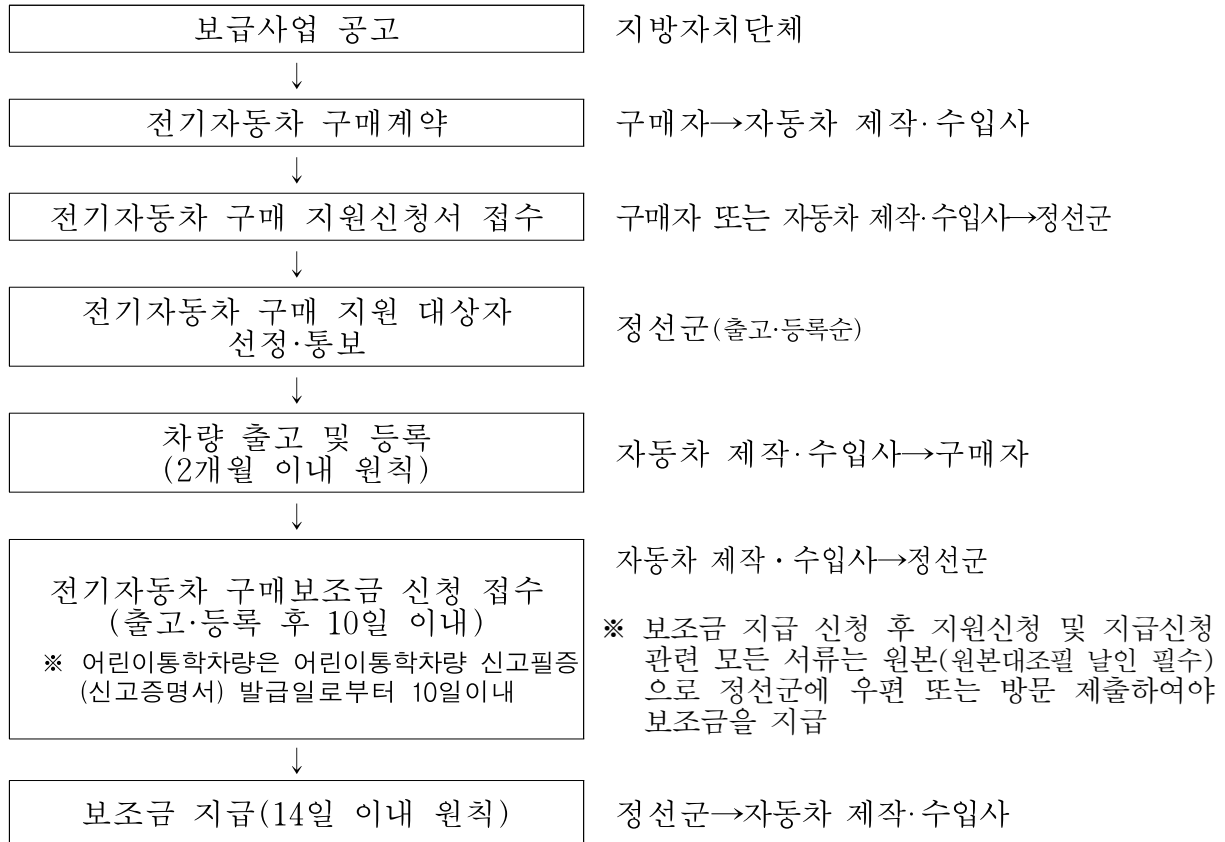
○ 차종별 보급 물량 배정

차종		사업량(대)
합계		146
승용	합계	86
	개인(80%)	68
	우선순위(10%)	9
	택시(10%)	9
화물	합계	58
	일반(60%)	18
	우선순위(10%)	10
	택배(20%)	20
	중소기업 생산우선(10%)	10
승합	합계	2
	개인(50%)	1
	정선군(5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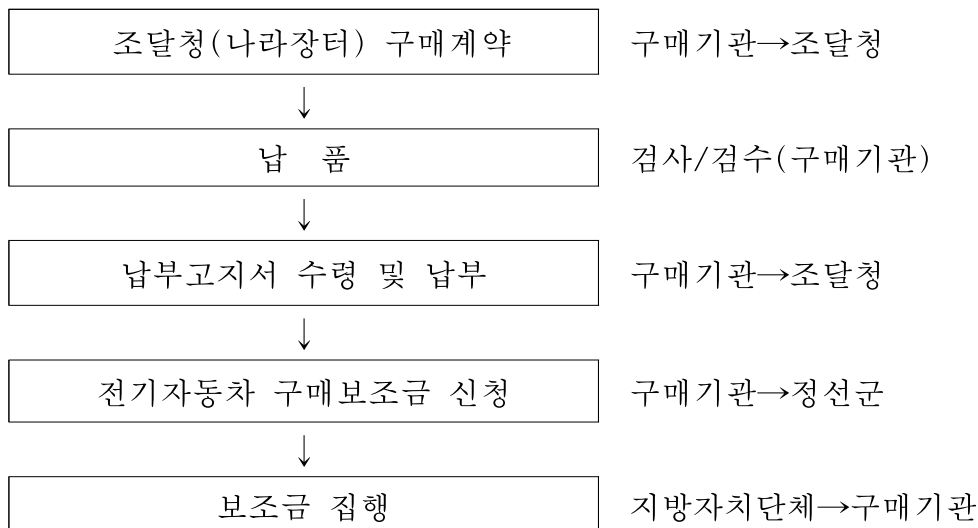
- (우선순위 대상자)
 - 해당 물량에는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생애 최초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 집행 잔여 물량의 경우 10월부터 일반물량에 통합하여 진행
- (중소기업 생산 우선 대상)
 - 집행 잔여 물량의 경우 10월부터 일반물량에 통합하여 진행
 - (택시물량)
 - 집행 잔여 물량의 경우 10월부터 일반물량에 통합하여 진행
 - (택배물량)
 - 집행 잔여 물량의 경우 10월부터 일반물량에 통합하여 진행

마. 보조금 지급 절차

○ 민간부문



○ 공공부문



- 구매기관(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

3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3. 11. ~ 2024. 11. 3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하며, 물량 및 예산 변경 시 재공고 예정

○ 신청방법

- 구매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방문하여

구매 계약 후 구매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작성·제출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는 접수된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ev.or.kr)에 제출

※ 구매계약 전 정선군청 전략산업과로 잔여수량 여부 필히 확인(033-560-2433)

○ 구매지원제출서류

구분	개인	개인·법인 사업자	렌트/리스 사업자
거주지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렌트/리스 차량 사용자의 주민등록초본 혹은 사 업자등록증(장기 렌트/리스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장기 렌트/리스에 한함)
공통 제출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호) - 차량구매계약서(출고 예정일 반드시 기재) - 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5호) -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서식7호) - 청렴이행서약서(서식8호)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혹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생애 첫 차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취득세 포함) ■ '23.2.13.이후 말소 완료된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노후경유차 관련 신차 구매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경 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서,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포함) - 택시 대상자 증빙서류 : 구매자의 택시사업자면허 - 지역 거점 사업 추진을 위한 초소형 전기차(승용·화물) 구매자 : 사업참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소상공인 추가지원금 신청자(소형 화물) :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어린이 통학차량용(승합) 구매자 : 학원 등기·인가 신고서 등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

※ 구매지원신청서상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할 때까지 자격부여가 불가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구매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가 중복지원할 경우, 전기차 지원신청자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대상자가 같아야 함.
- ※ 보조금 지급 신청 후 지원신청 및 지급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원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으로 정선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보조금을 지급

나.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 ※ ‘지원확정’ (대상자 선정) 단계가 아닌 ‘자격부여’ 단계에 출고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지원신청서 접수자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자동차 출고·등록 10일 이내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출고 확정일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1]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환수 동의서 [서식2]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 차량등록증 사본
 - 차량 전·후 사진
- 대상자 선정 후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

4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가. 보조금 신청 시 유의 사항

-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대기자로 변경됨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정선군에 차량을 등록하여야 함
- 공동명의로 구성된 모두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해당됨

나.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서식3호),

전기자동차 판매사유서(서식4호 서식)를 정선군에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
- 다만 강원도 지역 외 거주민에게 양도·양수될 경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보조금 반납 시행
 - * 단, 소유주가 사망하여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제외
- 의무운행기간 내 강원도 외 지역 주민과 공동명의로 소유주가 바뀔 경우 지방비 보조금 반납 시행 ※<표1>의 회수요율 및 공동 소유권 비율 적용
- 보조금 지급된 차량을 양수한 자는 의무운행기간 이행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나, 추후 의무운행기간 내 지방비를 환수한 차량을 말소하여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지방비는 제외
- 의무운행기간 내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양도·양수할 경우, 본인 부담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 매도 시 부당이득 발생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정선군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의 사용기간 및 요율 적용)
- 추가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 택시는 택시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만 매매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면허가 없는 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추가보조금에 대해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정선군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하지 않음.

○ 차량등록증 내 보조금 구입 대상 차량 및 양도·양수·말소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관련부서에 변동내용 통보

[표1]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다. 전기차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환경부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대행 - 통합콜센터 운영	032-590-3681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급속충전기 운영 - 급속충전기 고장신고, 회원카드 발급 및 결제	1661-9408
정선군 전략산업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033-560-2433

라. 상기 공고 사항은 추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지침을 따름.

정선군 공고 제2024-294호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전수관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토속음식 맛 전수관의 목적과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제4조)
- 나. 운영 방법과 관장 및 관리인,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8조)
- 다. 이용 및 이용의 취소, 이용료 반환과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제12조)
- 라. 전수 활동가의 직무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마. 강사 및 강사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4. 03. 13. ~ 2024. 04. 02.(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관광과)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053), 팩스(033-560-2593)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예술회관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토속음식의 전수와 활성화를 위하여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전수관은 사무실, 체험실, 다목적실 및 그 밖의 관련 시설로 구성한다.

②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식당, 판매, 체험시설의 운영
2. 토속음식 체험관련 프로그램 운영
3. 전수관 시설물 대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치) 전수관은 정선군 북평면 북평8길 33에 둔다.

제5조(운영방법 등) ① 전수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장) ①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북평면장을 관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엔 수탁자를 관장으로 임명한다.

제7조(관리인) ①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1인을 둔다.

② 관리인은 공개 모집하여 관장이 임용한다.

제8조(관리계획)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 ① 군수는 토속음식 전수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이용 허가 할 수 있으며, 토속음식 관련 교육, 전시, 세미나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시설물을 이용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 또는 교육, 전시, 세미나 등을 개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취소 등) ①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이용 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신청인이 예약 취소를 요청한 때
4. 천재지변등 사유로 전수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변상하지 않는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2.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신청인이 예약 취소를 요청할 때
3. 전수관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될 때
4. 신청인이 이용일 전일에 예약 취소를 요청한 때

②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금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토속음식축제 등 지역축제 참가자

3. 기타 토속음식 전수 및 육성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전수관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전수 활동가) ① 군수는 토속음식 전수의 활성화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수 활동가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전수 활동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토속음식 전수교육 진행
 2. 전수관 사무 보조
 3. 기타 토속음식 전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 ③ 제1항에 따라 선발한 전수 활동가에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수 활동가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
 2. 필요한 교육 지원
 3. 기타 전수 활동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강사) ① 군수는 전시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북평면 주민 중 토속음식과 관련하여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토속음식 맛 전수관 이용료

1. 체험이용료

구 분	이용료(원)	
	개인	단체
대 인	20,000	15,000
소 인	15,000	10,000

※ 비고

위 표에 따른 요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1. 대인 이용료 : 13세 이상인 사람
- 2. 소인 이용료 : 13세 미만인 사람. 다만, 보호자가 동반한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하여는 보호자 1명당 영아 1명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 3. 단체 : 10인 이상

2. 대관료

시설명	대관료(원)		비 고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2층 체험실	10,000	20,000	·휴일은 대관료의 20% 가산
3층 다목적실	10,000	20,000	

3.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	적 요
난 방	1회	대관료의 50%	·2층 체험실, 3층 다목적실
전기 사용료	1회	대관료의 20%	·2층 체험실, 3층 다목적실
가스 사용료	1회	대관료의 50%	·2층 체험실

【별표 2】

이용료의 반환 기준

구 분	반환기준(이용 예정일)		비 고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예약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 되었을 때	납부액 전액		
·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3일전 까지 취소	납부액 100%	
	2일전 까지 취소	납부액의 80%	
	1일전 까지 취소	납부액의 50%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미반환	

토속음식 맛 전수관 이용 신청서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토속음식 맛 전수관 ()이용변경신청서

1. 건명 : 20 년 월 일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이용허가

2. 당초 이용허가자

단체명 :

성 명 :

3. 변 경 내 역

가. 변 경 전 :

나. 변 경 후 :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관장 귀하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2024-304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정 선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공람목적 :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일원(파인앤유APT ~ 삼탄아트마인)
- 사업내용 :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군계획시설(궤도) : 신설 1개소(L=2,779m, A=38,286㎡)
 - 지구단위계획 : 궤도시설 신설 1개소 [L=2,779m(구역 내 305m), A=38,286㎡(구역 내 3,923㎡)]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4. 3. 15. ~ 2024. 3. 29.(개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공람장소 비치)
 -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3.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서면 제출

4.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제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편입토지조서(교통시설 : 궤도)

연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고한읍 고한리	3-1	대	5,677	663	한국광해 광업공단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				
2	“	3-6	대	225	225	김○수	정선군 고한읍 고한4길 34				
3	“	3-9	전	3	3	국 (기획재정부)	-				
4	“	5-26	잡	48,913	3,923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말사정 암사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				
5	“	21	잡	6,268	109	한국광해 광업공단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				
6	“	21-4	임	10,366	1,148	김○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9 한양아파트 507-1201				
7	“	25-17	도	2,081	1,814	국 (기획재정부)	-				
8	“	31-5	도	927	801	국 (기획재정부)	-				
9	“	36-7	대	2,580	55	정선군	-				
10	“	36-17	대	2,126	479	정선군	-				
11	“	36-19	대	750	223	정선군	-				
12	“	274-4	천	13,132	2,310	국(환경부)	-				
13	“	284	대	216	216	정선군	-				
14	“	285	대	130	130	정선군	-				
15	“	285-1	대	90	90	정선군	-				
16	“	285-2	대	60	60	정선군	-				
17	“	285-3	대	130	104	정선군	-				
18	“	285-4	대	142	142	정선군	-				
19	“	285-5	대	84	84	정선군	-				
20	“	285-6	대	102	102	정선군	-				

21	“	285-7	대	116	116	정선군	-				
22	고한읍 고한리	285-8	대	178	178	정선군	-				
23	“	산1-16	임	106,258	1,834	국(산림청)	-				
24	“	산1-17	임	4,890,186	6,208	국(산림청)	-				
25	“	산1-108	도	25,362	211	정선군	-				
26	“	산1-145	도	5,499	83	정선군	-				
27	“	산1-160	임	3,059,675	3,159	국(산림청)	-				
28	“	산1-194	도	2,319	486	정선군	-				
29	“	산1-195	임	4,058	348	국 (기획재정부)	-				
30	“	산1-208	임	5,670	1,581	정선군	-				
31	“	산1-210	임	12,263	222	정선군	-				
32	“	산1-212	임	786	76	정선군	-				
33	“	산216-1	임	6,936,478	9,489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말사정 암사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				
34	“	산216-5	천	4,340	215	국(환경부)	-				
35	“	산310-3	임	5,240	1,215	국 (국토교통부)	-				
36	“	산310-6	임	1,680	94	국 (기획재정부)	-				
37	“	산312-1	구	9,170	90	국 (기획재정부)	-				
계				15,163,280	38,286						

■ 편입토지조서(지구단위계획구역)

연 번	위치	지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용	
1	고한읍 고한리	5-26	잡	48,913	46,030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말사정 암사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	-	-	-	-
계				48,913	46,030						

정선군 공고 제2024-310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4. 5. 17.)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정선군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및 도 조례 제명 및 조문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재 명칭 변경사항 정비
 - 문화재 ⇒ 국가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 주요 용어 변경 사항

현 행	변 경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자연/무형)유산
문화재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문화재수리	국가유산수리
도무형문화재	도무형유산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유산
문화재자료	문화유산자료

3. 입법예고 : 2024. 3. 15. ~ 3. 25.(10일간)

4. 의견제출

해당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서면)

- 주 소 : (우)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문화체육과)
- 전 화 : 033-560-2564
- 팩 스 : 033-560-259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2조(「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 위원·전문위원”을 “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으로 한다.

제3조(「정선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지정자연유산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제4조(「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5조(「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의 개정)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를 “정선군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3조”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로,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도지정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나 강원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를

“무형유산”이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전승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 이수자,”로 한다.

제3조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을 “(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을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해제)”를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6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무형문화재”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정선군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조례」의 개정) 정선군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정선아리랑 창 기능보유자”를 “정선아리랑 보유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 무형 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정선아리랑전수회”를 “정선아리랑보존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정선아리랑전수회」 회원이 아닌자가 전수관”을 “「정선아리랑보존회」 회원이 아닌자가 전수관”으로 한다.

제10조(「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정선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도지정유산,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도지정유산,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5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마목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생략)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13. (생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13. (현행과 같음)

제2조(「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 시마다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생략)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 ----- ----- ----- ----- -----.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u>문화재청 또는 시·도 소속 전직·현직 문화재 위원·전문위원</u>	2. <u>국가유산청</u> ----- ----- <u>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정선군 군계획 조례」)

현행	개정안
제52조(건폐율 강화 및 완화) ① (생략)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생략)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생략) <신설>	제52조(건폐율 강화 및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다. (현행과 같음)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자연유산

현행	개정안
<신설> 6. ~ 8. (생략) ③ ~ ⑥ (생략)	<u>용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u>지정자연유산</u> 마. 「<u>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u>등록문화유산</u> 6.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u>문화재에 대한 감면</u>) ① 삭제	제4조(<u>국가유산에 대한 감면</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현행	개정안
<u>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문화재보호법</u>」 제24조 및 제70조와 「<u>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u>」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u>정선군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조례</u> 제1조(목적) ----- 「<u>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제12조 및 제32조와 「<u>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u>

현행	개정안
국가 및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조례」 제21조----- ----- <u>도지정 무형유산</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나 강원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을 말한다.	제 2 조 (정 의) -----. 1. “무형유산”이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 ----- 무형유산을 -----. 2. “무형유산 -----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이수자, ----- -----.
제3조(위원회 설치)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설치) 무형유산----- 무형유산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제4조(위원회의 기능) -----. 1. 무형유산----- -----

현행	개정안
2. <u>무형문화재</u> 및 보유자 등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u>무형유산</u> ----- ----- -----
3. <u>무형문화재</u> 및 보유자 등의 지정·해제 계획에 대한 심의	3. <u>무형유산</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무형문화재</u>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간사) ① ----- <u>무형유산</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u>무형문화재</u> 보존전승 활동) <u>무형문화재</u> 보유자 등은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u>무형유산</u> 보존전승 활동) <u>무형유산</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무형문화재</u> 기록화사업 참여	4. <u>무형유산</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군수가 <u>무형문화재</u> 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참여	6. ----- <u>무형유산</u> ----- ----- -----
제12조(<u>무형문화재</u>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① 군수가 <u>무형문화재</u> 보유자 등을 추가로 인정 또는	제12조(<u>무형유산</u>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① ---- <u>무형유산</u> ----- -----

현행	개정안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문화재청장</u>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서를 제출한다. 제13조(<u>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해제</u>) 군수는 <u>무형문화재</u>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u>무형문화재</u> 해제 등을 <u>문화재청장</u>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u>무형문화재</u> 전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 4. (생략) 제14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u>무형문화재</u> 보유자 등이 그 <u>문화재</u>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경비 2. <u>무형문화재</u>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 <u>국가유산청장</u> -----. 제13조(<u>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해제</u>) ----- <u>무형유산</u> ----- ----- <u>무형유산</u> ----- <u>국가유산청장</u> -----. 1. (현행과 같음) 2. ----- <u>무형유산</u> ----- ----- 3. ~ 4. (현행과 같음) 제 1 4 조 (지 원) ----- -----. 1. <u>무형유산</u> -----<u>무형유산</u>을 ----- 2. ----- <u>무형유산</u> ----- ----- -----

현행	개정안
3. 군수가 <u>무형문화재</u> 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 <u>무형유산</u> ----- -----
4. <u>무형문화재</u>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4. ----- <u>무형유산</u> -----
제15조(문화축제 행사) ① <u>무형문화재</u>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축제 행사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제15조(문화축제 행사) ① <u>무형유산</u> -----.
제16조(준용) 그 밖에 <u>무형문화재</u>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 보호법」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 <u>무형유산</u> ----- - 「 <u>무형유산</u>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강원특별자치도 <u>무형유산</u>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u>보조금</u>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 <u>강원도 무형문화재</u>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u> ----- ----- ----- ----- ----- -.

제8조(「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생략)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 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u>문화재</u> 등 화재, 붕괴, 폭발사고 5. ~ 7. (생략) ③ (생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국가유산</u> ----- ----- 5.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정선군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u>무형문화재</u>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무형유산</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현행	개정안
1. "정선아리랑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u>무형문화재</u> 제1호로 지정된 <u>정선아리랑 창기능보유자</u>의 전수활동을 지원하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정선아리랑"이라 함은 지방에 전승되는 무형의 토착민요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u>지방 무형 문화재</u> 제1호를 말한다. 제6조(운영) ①전수관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전수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수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반하지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u>정선아리랑전수회</u> 등에 시설물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수탁자는 군수가 <u>무형문화재</u> 전승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먼저 실시해야하며, 위탁받은 시설물 관리일체를 책임진다.	1. ----- ----- ----- <u>무형유산</u> ----- ----- <u>정선아리랑 보유자 등</u> ----- ----- -----. 2. ----- ----- ----- ----- <u>무형유산</u> ----- -----. 제6조(운영) ① ----- -----. ----- ----- ----- <u>정선아리랑보존회</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무형유산</u> ----- ----- ----- -----.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①정선아리랑 전 승보급을 목적으로 구성된『정 선아리랑전수회』회원이 아닌 자가 전수관 시설을 사용하고 자 할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거나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대 상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 도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① ----- ----- 구성된『정선아 리랑보존회』회원이 아닌자가 전수관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 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 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 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정의) ----- -----. 1. ----- ----- ----- ----- ----- (「국가유산기 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 -----

현 행	개 정 안
를·에 따른 도시공원, ·건축 법·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 9. (생 략)	----- ----- -----. 2. ~ 9.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선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정 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 를 사용한다. 1. ~ 4. (생 략)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 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 설물 및 <u>문화재</u> 등의 위치표 시 6. (생 략)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국가유산</u> -----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설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시설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문화예술진흥 및 <u>문화재</u> 관	제6조(시설국에 두는 과) ① (현 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u>국가유산</u> -

현행	개정안
리에 관한 사항 6. ~ 39. (생략)	----- 6. ~ 39. (현행과 같음)

제13조(「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2.·3. (생략)	제2조(정의) ----- -----. 1. ----- <u>국가·도 지정유산,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u> ----- ----- ----- ----- ----- ----- ----- ----- ----- -----.
제4조(위원회 설치) ① ~ ⑥ (생략)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문화재</u> 업무담당으로 한다. ⑧ (생략)	제4조(위원회 설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국가 유산</u> -----.
제12조(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	제12조(지정의 해제) ① ----- -----

현행	개정안
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 제할 수 있다.	----- -----.
1. 향토문화유산이 <u>국가·도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 료</u> 로 지정된 경우	1. ----- <u>국가·도지정유 산,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 료</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유형	사고 유형	주관부처	주관부서
자연재난	①풍수해	행정안전부	안전과
	②대설·한파	행정안전부	안전과
	③낙뢰	행정안전부	안전과
	④가뭄	행정안전부	안전과
	⑤지진	행정안전부	안전과
	⑥황사	행정안전부	안전과
	⑦폭염	행정안전부	안전과
	⑧산사태	산림청	산림과
사회재난	⑨산불	산림청	산림과
	⑩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부	환경과
	⑪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부	환경과
	⑫댐붕괴	국토교통부	건설과
	⑬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청	안전과
	⑭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무행정관
	⑮전력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과
	⑯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고용노동부	전략산업과
	⑰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도시과
	⑱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축산과
	⑲감염병	보건복지부	보건소
	⑳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보건소
	㉑식용수	환경부 국토교통부	상하수도사업소
	㉒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교통관리사업소

재난유형	사고 유형	주관부처	주관부서
	㉓도로터널	국토교통부	도시과, 건설과
	㉔가스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과
	㉕국가유산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과
	㉖미세먼지	환경부	환경과
	㉗저수지붕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4-31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4. 5. 17.)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정선군 규칙에 인용한 상위법령 및 도 조례 제명 및 조문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재 명칭 변경사항 정비
 - 문화재 ⇒ 국가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 주요 용어 변경 사항

현 행	변 경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자연/무형)유산
문화재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문화재수리	국가유산수리
도무형문화재	도무형유산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유산
문화재자료	문화유산자료

3. 입법예고 : 2024. 3. 15. ~ 3. 25.(10일간)

4. 의견제출

해당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서면)

- 주 소 : (우)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문화체육과)
- 전 화 : 033-560-2564
- 팩 스 : 033-560-259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별지 제2호 및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3조(「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9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u> 를 준용한다.	제9조(준용) ----- ----- <u>「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u> 을 ----- -----.
부칙 제2013호 (생략)	부칙 제2013호 (현행과 같음)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적 용 분 야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작 품 료	어문저작물의 희곡 각색료	작품당	1,000~5,000	
	관현악합주곡 작곡	1곡(30분 내외)	1,000~5,000	
	독 · 중주곡 작곡	10분 내외	500~3,000	
	국악 편곡	10분 내외	500~3,000	
	무용 창작	10분 내외	500~2,000	
	무용 편곡	1작품	500~2,000	
객 원 출 연 료	특별출연 A급	1회	600~1,500	
	특별출연 B급	1회	300~600	
	특별출연 C급	1회	150~300	
	일반객원출연 및 연습	1일	50~120	
	※ 유명연주자 및 공연자와 협연시 상호약정에 의한 실비보상			
공연보조	도안, 조명, 음향기사	1회	300~1,000	
	소품 운송, 홍보 등	1회	50~200	
	사진 촬영 등	1회	300~1,000	
기 타	원작 사용료	작품당	1,000~10,000	

비고: 객원 출연료 보상 기준

- A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 B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 C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
- 일반 객원 출연 및 연습: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미만인 사람

[별표]

[illegible]

■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1쪽)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문화유산 구분	① 지정 종류		☐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문화유산			
	② 유형/종목					
대상 문화유산 현황	③ 명칭	한글		한자		
		영문				
	④ 시대/연대					
	⑤ 소재지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⑥ 구조/형식 /형태					
	⑦ 재료/품질					
	⑧ 수량/규모 /크기					
	⑨ 현재 용도 /기능					
	⑩ 소유자 (단체)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⑪ 연혁/유래 /특징						
⑫ 관리단 체(안)	단 체 명		대표자			
	지정신청사유					
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 서류	1.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5.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2쪽)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 ① 지정 종류: 문화유산에 따라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② 유형/종목: 국가지정유산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예) 목조건축물류/궁전, 석조건축물류/석탑
- ③ 명칭
 - 문화유산의 성격·유형·시대 등 그 대표성·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유산이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
 - 다만, 문화유산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 ④ 시대/연대
 -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
 - 다만, 건립·제작·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 ⑤ 소재지
 -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병기합니다.
 -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을 붙입니다.
- ⑥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형태 등을 적습니다.
- ⑦ 재료/재질: 문화유산을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 ⑧ 수량/규모/크기: 해당 문화유산의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 ⑨ 현재의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 ⑩ 소유자: 해당 문화유산(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향토무형문화유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자(단체)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⑪ 연혁/유래/특징
 - 문화유산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로 첨부합니다.
- ⑫ 관리단체(안):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관리단체 지정계획과 지정사유를 적습니다.
향토무형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⑬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문화유산의 지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습니다.
 -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민속적·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민속적·기술적 가치 등)
 -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로 첨부합니다.

(3쪽)

향토문화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향토문화유산이 건축물·구조물 등인 경우 (면적: m²)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용도	소재지/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 향토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 (면적: 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1쪽)

향토유형문화유산 관리대장

문화유산종류			지정번호		
명칭	한글			한자	
	영문				
분야			재료		
지정일			해제일		
구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소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점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지정사유					
내용 (연혁, 유래, 전설)					
현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쪽)

향토유형문화유산 제 호 ○○○○ 관 리 상 황 (보수정비·변동사항 등)	
날 짜	내 용

(3쪽)

향토유형문화유산 제 호 ○○○○○○						
지 정 구 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 구역 (㎡)	소 유 자	
					주소	성명

(4쪽)

향토유형문화유산 제 호 ○○○○

위치도/실측도/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정선군 공고 제2024-320호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된 상권활성화 지원시설(황토 약초 게스트하우스, 아리랑마을 콘텐츠홀)의 이용료를 조정·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변경(안 별표 2)
 - 황토 약초 게스트하우스

구분	수량	시설 이용료	기준인원(명)	비고
다목적실	1	1일 최대 20,000원		
4인실	4	30,000원	4	가족실
2인실	1	15,000원	2	

-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부대시설

시설명	개소수	이용기간 (1회 사용기간)	이용료	비고
족욕장	8	(30분)	3,000원	체험료 및 음료 별도
전시·판매장	1	입점 업체	판매 수수료 5%	
강의실	1	1시간	10,000원	1일최대 50,000원
스튜디오	1	1시간	10,000원	1일최대 50,000원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4. 03. 14. ~ 04. 03.(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

- 연락처 : 전화(033-560-2440), 팩스(033-560-2594)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황토 약초 게스트하우스				
구분	수량	시설 이용료	기준인원(명)	비고
다목적실	1	1일 최대 20,000원		
4인실	4	30,000원	4	가족실
2인실	1	15,000원	2	
• 1인 1박 기준(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 1일 기준(1일 : 09:00~18:00) • 다목적실 이용료는 개인(사업자)이나 민간단체 등이 팝업스토어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 시 징수하며, 1개월 기준 최대 5일 사용 가능 • 조식 미제공, 실내 금연 • 침구 및 세면도구 : 미제공 원칙(침낭 등 개인 침구류 및 세면도구 지참) ※ 현장 별도 요청 시 추가비용 발생 • 제공시설 : 무선인터넷(WIFI), 객실별 에어컨 및 TV, 공용 주방, 공용 화장실/샤워실(남/녀 별도),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족욕장 1회 이용 가능 (1회당 최대 30분 소요)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부대시설				
시설명	개소수	이용기간 (1회 사용시간)	이용료	비고
족욕장	8	(30분)	3,000원	체험료 및 음료 별도
전시·판매공간	1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5%	
강의실	1	1시간	10,000원	1일 최대 50,000원 (집기 사용료 포함)
스튜디오	1	1시간	10,000원	1일 최대 50,000원 (장비사용료 포함)

정선군 공고 제2024-321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안)에 따라 정선군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2천 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2천 제곱미터 초과 시 1백 제곱미터당 증가 점포수는 1개소로 한다” 로 점포 수 기준을 변경하고, 면적 산정 방법을 신설하여
- 정선군 지역 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변경(안 제41조)
 - 밀집기준 :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 ⇨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 2천 제곱미터 초과 시 1백 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소로 한다.
 - 면적산정 방법 신설 : 면적 산정 시 정선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공원, 유흥지 등의 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4. 03. 14. ~ 04. 03.(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

- 연락처 : 전화(033-560-2440), 팩스(033-560-2594)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 중 “30개”를 “20개”로, “한다”를 “하고, 2천 제곱미터 초과 시 1백 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소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정선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공원, 유희지 등의 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 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 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u>30개 이상</u> 밀집하여야 <u>한다</u> . <u><단서 신설></u> 2. (생략)	제41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 ----- ----- -----. 1. ----- ----- ----- <u>20개</u> ----- <u>하고</u> , <u>2천 제곱미터 초과 시 1백 제곱</u> <u>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소로</u> <u>한다. 다만, 면적 산정시 정선군</u> <u>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로 도</u> <u>로, 주차장, 공원, 유흥지 등의</u> <u>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u> 2. (현행과 같음)

정선군 공고 제2024-324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정선군 향토민상”의 명칭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상의 품격을 높이고, 정선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의 명칭(안 제2조)
 - 상의 명칭은 “정선군민대상”으로 함
- 수상 인원 및 대상(안 제3조~제4조)
 - 수상인원은 3명 이내, 수상대상은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
- 수상제외자(안 제5조)
 - 군민대상 및 같은 공적으로 정선군 향토민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상후보자 추천 및 수상자 결정(안 제6조~제8조)
 - 군 소속기관(읍·면 포함)의 장과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함
 - 수상자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제11조)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총무행정관)
- 전 화: 033-560-2237
- 팩 스: 033-560-2590
- 이 메 일: my3023@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민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선군민대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정선군민대상” (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수상 인원) 군민대상 수상인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수상 대상) ① 군민대상의 수상 대상은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수상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군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선군 향토민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군 소속기관(읍·면을 포함한다)의 장과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추천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초본 1통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3항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한다.

제8조(시상) ①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민대상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자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산한다.

1.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심사

2.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고 심사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대표 등 회원 및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라도 해당 후보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회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15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수상자 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천 서

사 진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남, 여)
	주 소			
	소 속		직 위 (직 급)	
	전화번호			
주 요 경 력				
년 월 일	내 용			
<추천사유>				
위 사람을 년도 정선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1. 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위	

2. 후보자 공적사항

가. 공적개요

나. 세부공적사항

연 월 일		공 적 사 항
부터	까지	

〈비고〉 본란이 부족할 때에는 동일 규격용지를 이용하여 별지로 작성첨부

첨 부 : 공적증빙자료 1부.

상기 사항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주 소)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년 수	성 별	공 적 요 약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정선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내용〉

정선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 및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사진, 성명, 나이, 경력사항, 공적사항 공개

년 월 일

정선군민대상 수상 후보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별지 제4호서식]

정선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의결서

□ 의 결 : 년도 정선군민대상 수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함.

순 위	직위(주소)	성 명	평가점수	선정결과	비 고

년 월 일

정선군민대상

심사위원장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선군민대상 수상자 대장

수상연도		사 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위 및 경력		

[공적내용]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시상(안 제8조)

- (상패) 19만원 × 3명 = 57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담당관 황 승 훈

정선군 공고 제2024-325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규칙의 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5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 전 화 : 033 - 560 - 2237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my302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담당관 황 승 훈

정선군 공고 제2024-341호

2024년 정선군 명예군민 추천 공고

외국인, 해외동포 또는 정선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에서 정선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2024년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정 선 군 수

1. 주 관: 정선군 2. 추천기간: 2024. 3. 19.(월) ~ 4. 5.(금) 3. 명예군민의 자격 ○ 정선군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해외동포, 정선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서 명예군민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1. 추천일 현재 우리군이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군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내·외국인 및 해외동포 2. 소속사회에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정선군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4. 향토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5.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대상자 추천 ○ 정선군 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정선군민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함. ○ 추천기한 : 2024. 4. 5.(금)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 yul1206@korea.kr - 우 편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5. 추천 구비서류 ○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서 1부. ○ 주요 프로필 1부. 6.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및 수여 방법 ○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선정된 대상자는 최종 정선군의 의결을 거쳐 수여 ※ 정선군민의 날 기념행사(' 24.6.12. 예정) 시 수여 7. 제출처(문의처) ○ 정선군청 총무행정관(033-560-2232)(26131)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

정선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서식

	성 명 (한자)	주 소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직 업)	비 고 (연락처)
*사진		정확하게작성 (우편물 발송 시 활용)			
공 로 내 용					
○ ○ ○ ○					
〈추천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주 소					

※ 주요 프로필 포함